

생물안전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「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생물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·감독하여 연구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본교 생물안전위원회(SKKUIBC: Sungkyunkwan University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, 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동법 시행령」, 「동법 시행규칙」 및 「동법 통합고시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용어 정의)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생물안전”이라 함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,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.
2. “연구시설”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·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,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단위를 말한다.
3. “유전자변형생물체”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.
 - 가.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
 - 나.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
4. “환경방출”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, 장치 그 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5. “위해성 평가”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
 - 환경방출을 위한 개발·실험 승인 등
2.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
 - 연구시설 신고, 수입 신고, 수출 통보 등
3. 생물안전 교육·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4.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위원장은 본교에서 행해지는 연구·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“위원회”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②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③위원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내·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- ④위촉 외부위원은 생명과학,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생물안전관리자, 의료관리자, 시설안전관리자,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임기) ①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위원의 사임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기 만료된 위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위원장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·의결한다.
- ④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.
- ⑤본교 내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을 제·개정하고, 생물안전에 관한 필요사항을 지시한다.

제8조(생물안전관리책임자) ①총장은 본교 생물안전에 관한 법적 사항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.

-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본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2. 본교 생물안전 관리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본교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
4. 본교 내 생물안전 교육·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
5.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
6.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·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
7. 본교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
8. 기타 본교 내 생물안전확보에 관한 사항

제9조(생물안전관리자) ①생물안전관리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, 본교 내 생물안전 전반에 관한 운영 실무를 담당한다.

- ②생물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본교 내 생물안전 확보 전반에 관한 실무
2. 본교 내 생물안전 교육·훈련 실시
3. 본교 순회 점검 및 생물안전 관련 수칙 이행 감독
4. 생물안전관련 사고 조사 및 대응과 보고에 관한 실무

제10조(회의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1.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
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.

④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청취 및 자문)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서면심의)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고,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13조(간사)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생물안전관리 부서장 또는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. 간사는 위원회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14조(비밀유지)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, 진술내용,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기타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한다.

제15조(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)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② 본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(위원회 수당 등) ①위원회는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해서 회의 수당, 자문료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위원수당 및 자문료 등은 본교 내부 규정에 따른다.

제17조(기록작성 및 보고)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검토 내용에 대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며, 총장 및 위원장의 요청 시 내용을 보고한다.

②기록의 보관은 본교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5년 이상으로 한다.

제18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